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0653(본소), 2020나25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0653(본소), 2020나2519(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19 선고 2019가소1236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9. 22.

판결 선고 2020. 11. 17.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9. 19. 선고 2019가소123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29,67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가 2016. 2. 28. 18:1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후 피고를 탑승시키고 출발하자 좌석에

앞으려던 피고는 미끄러지면서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치료비 582,050원 및 손해배상금 317,950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일체의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향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령금액 : 90만 원

합의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료공단에서 구상청구시 본인이 책임지겠음)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치료비 중 위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09810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64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31134호로 위 구상금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9. 3. 2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36,937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9. 1. 9. 위 판결금 763,720원을, 2019. 4. 8. 위 소송비용액

36,9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는 구상의무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구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

판결금 및 소송비용액 합계 800,650원(= 763,720원 + 36,930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비용액 36,930원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9.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은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에 피고 주장과 같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거나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1,609,328원의 일실수입, 820,350원의 치료비 및 200만 원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인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존부에 관해서만 심리가 되었을 뿐,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인 D 시내버스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나 피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된 바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20. 9. 16.자 반소에 대한 부동의서를 통하여 위 반소 제기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소영

판사임진수

판사신정수